

2019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

성경과 세법이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

일시 | 2019.8.30(금) 오후 2시 - 오후 4시

장소 | 열매나눔재단 나눔홀

주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순서 및 목차

사회: 이헌주 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1.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p. 3-6

| 유경동 교수 (감리회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

2. (종교인)퇴직소득 흐름과 과세구조 p. 7-13

| 최호윤 회계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삼화회계법인)

3. 목회자 퇴직금의 실제적 사례와 제안 p. 14-16

| 정준경 목사 (생동교회 담임)

질의 및 응답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

유경동(감리교신학대학교)

한국 교계에 목회자의 퇴직금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들이 있으며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는지 우려가 된다. 퇴직(退職)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퇴직금(退職金)은 자신이 속하여 있던 직장에서 주는 금전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성직자의 퇴직금은 따라서 자신이 성직의 직무를 감당하였던 교회 또는 교회로 연합되어 있는 교단에서 주는 급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성직자 퇴직금의 사안은 주로 성직자가 받는 퇴직금의 성격 또는 그 규모에 대한 것인데 필자는 신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에 국한하여 원론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에 들어선 성직자의 존재 가치, 둘째, 성직자가 은퇴 후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 그리고 셋째, 퇴직금과 연관된 재화의 문제이다.

첫째, 누구나 노년층에 진입하게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직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성경에 나타나는 노인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된다고 본다.

하나, 성경에서 노인은 마땅히 공경 받아야 할 존재로 묘사된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32).”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언 16:31).” 노인이 공경을 받는 이유는 노년은 인생의 지혜를 소유한 존경받아야 할 어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약에서 노인들은 국정을 자문하고 왕에게 충고를 한 사람들이기도 하다(왕상 12:6; 12:8).

둘, 노인이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즉 노년에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여 한다. 노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청년의 시기와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시 92:14).” 노년에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후대에 전하는 사명과 연관이 된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편 71:18).” 그리고 하나님은 노인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이사야 46:4).”

셋,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원은 노인을 포함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이다. 공동체는 힘이 없는 노인이라도 돌보아 주어야 한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시편 71:9).” 노인을 포함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축복을 받게 된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리라(이사야 65:20).”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예레미야 31:13).”

간략하면, 노인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퇴직한 성직자의 경우도 위의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직자도 노년층에 들어서면 인권의 차원에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노인은 공동체의 유산으로서 미래를 위한 정신적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년층이 되면 주류사회에서 소외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거주 안정, 경제적인 돌봄, 그리고 의료 지원이 따라야 한다. 이는 보편적인 인권에 부응할 뿐 아니라 마땅히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몫이기도 하다.

하나, 노년의 성직자에게도 보편적 인권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년에 대한 지지는 당연히 성직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도 교회의 직무를 담당하였던 퇴직한 성직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노인에 대한 고용과 교육 그리고 복지 정책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정치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공동체의 자산으로서 노인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선도하기 위하여 교회가 앞장서는 것은 퇴직한 성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 전체를 위한 소명이기도 하다.

둘, 교회는 퇴직한 성직자들이 그 직무의 가치를 인정받고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경제적 안정은 필수이다. 노인은 젊은 세대를 선도할 수 있는 자산이며 공동체가 배워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교회나 교단은 연금과 같은 대안을 통하여 노년의 성직자 가치가 지속적으로 재생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 노년에 들어선 성직자들도 가족이 없어서 홀로 남거나, 경제적 지원이 없거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성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였던 교회나 교단에서의 적절한 지원과 배려 그리고 돌봄은 필수적이다.

간략하면, 퇴직한 성직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 공동체의 돌봄, 의식주의 기본적 인권이 충족되어야 한다.

셋째, 퇴직금은 직무를 수행하였던 성직자에게 교회나 교단에서 주는 급여라고 할 때, 그 성격은 소유나 소비로서 재산의 의미라기보다는 성직의 영적 지위를 유지하여 주는 기독교 공동체 정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 성직자의 퇴직금은 재산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화여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마 6:2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물은 그 재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용되는 '청지기 정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있다. 따라서 퇴직금이 재산의 축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고 '나눔'이라는 교회전통의 정신과 연관이 되어야 한다.

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적 소유를 제한 할 수 없지만 퇴직금과 관련하여 성직자와 교회의 권리가 동시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성직자의 퇴직금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세속적 돈의 가치로 전락하는 순간, 교회나 성직자는 방황하게 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6-10).

셋, 성직자의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소비의 정신과 연관하여 사회적 통념과 적절한 수준의 눈높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의무가 사랑과 배려, 그리고 나눔에 있다면, 그 가치는 퇴직금의 규모에 달려있지 않고 공동체의 도덕과 윤리를 증진시키는 정신과 연관이 된다. 이는 퇴직한 성직자의 생활방식이 직무 수행이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금의 수준은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가사회의 노년층에 들

어선 일반 노령인구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간략하면, 성직자의 퇴직금은 재산 축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고 그 수준도 사회 통념의 눈높이에 조응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직금을 통하여 사회를 선도하려는 도덕적 사안과 연관이 된다. 물질의 원래 소유가 하나님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청지기 정신'에 있다. 아울러 퇴직금의 사용 출처는 전적으로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나눔'에 있다.

현대 인문학에서도 정의론의 핵심 문제는 "'나눔'의 정신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있다. 전통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였던 공리주의와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주의가 인류사회를 이끌어온 기본적인 원리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책임을 묻는 '의무론'이 등장하였지만,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적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언명법'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배의 정의'가 수행되는 사회 체제를 강조하게 되었지만 정작 문제는 분배의 형식과 분배할 때 전제되어야 할 공동체 의식이 준비되었는가는 전혀 다른 사안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구공동체는 바로 이 분배의 문제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신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성직자의 퇴직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 정신, 나눔과 배려 그리고 소명의 영적 유산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필자는 성직자의 퇴직금 사안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신학적 원론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것은 각 각 성경에서의 노인에 대한 관점과 노령에 들어서게 될 때 직면하는 인권으로서의 실존적 의미, 그리고 재화로서의 퇴직금과 연관된 도덕 문화적 정신 등이다.

성직자와 연관된 급여로서의 퇴직금이 성경의 전통과 존재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을 함양하는 요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종교인)퇴직소득 흐름과 과세구조

최호윤(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삼화회계법인)

1. 들어가는 글

정성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퇴직소득세관련 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서 반려된 이후 7월 17일 법안심사2소위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를 바라보는 일반 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신학적 검토와 논의가 기독교 내부의 관점이라면 일반 사회가 바라보는 실정법 차원에서 종교인퇴직금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은 교회가 사회와 소통해야 할 통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가 가지는 의의가 가볍지만은 않다고 하겠다.

2. 퇴직금제도의변천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보호관점에서 그동안 여러 형태의 법규정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1953: 근로기준법제정(임의 제도로 퇴직금제도 도입)
- 1961: **퇴직금지급제도 시행**(30인 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
- 1975: 16인 이상 작업장 강제 적용
- 1977: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도입**
- 1987: 10인 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
- 1989: 5인 이상 사업장 강제 적용
- 1993: **퇴직전환금 납부 시행**(국민연금으로 납부) <-1999.3까지 시행
- 1997: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도입**
- 2000: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폐지**
- 2000.12: **비과세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연금납부액을 소득공제(비용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2002년부터 적용)**
- 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퇴직연금제도 도입**, DC/DB/IRP)
- 2010: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 2010.12.31: **퇴직보험(신탁) 폐지**
- 2015.1: 퇴직소득공제 방식을 40%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전환
- 2016: **신설사업장 퇴직연금제 도입 의무화**
- 2022(예정):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여 지급하던 단계에서 실질적인 자금 확보할 목적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유도하다가, 다시 회사의 경영 또는 자금 사정에 전혀 영향 받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연금제도 중심으로 전환해 가는 중이다.

근로자			공무원 등
개인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 (DB/DC형)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3. 퇴직금의 성질

퇴직금의 성질에 관해서는 1) 근로자가 기업에 장기간 근로한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공로보상설', 2)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는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므로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기업이 지급하는 급부로 보는 '생활보장설', 3)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임금후불설'이 있으며 학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¹.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미리 적립하였다가 나중에 수령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연금을 불입하는 시점에서는 비용으로 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소득이 회수/수령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현행 (퇴직)연금소득과세 체계가 연금저축 이자소득에 과세하는 논리보다 구조적으로 더 타당하다.

4. 퇴직금 관련 규정

가. 법정 지급 의무

일반 회사 또는 법인(法人)의 직원들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²,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³.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1 원천징수 이론과 실무,삼일인포마인, 2016, pp929~930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부교역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의 판례들이 있으며, 단순한 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이다', '근로자가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관계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들의 경우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며,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⁴하므로 위임자인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⁵.

담임목회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임관계를 준용하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담임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부교역자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나. 과세대상 퇴직소득의 범위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으로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⁶, 3)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⁷을 퇴직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교회가 지급하는 사유가 퇴직을 원인으로 하면 퇴직금,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공로보상금, 전별금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금지급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르되, 특정한 개인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또는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임원⁸의 경우 2011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정관 규정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른 자율적인 누진율 적용이 가능하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로 최대 누진율이 제한되며⁹,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또는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된다.

4 상법 제382조 제2항

5 민법 제686조 제1항

6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7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4항 제4호

8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회장,대표,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업무집행사원,감사 등이 해당한다.

9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이와는 별도로 은퇴(퇴직)한 원로목회자에게 교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한다¹⁰.

5. 퇴직금 소득세계산구조

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에 관한 규정은 2013년과 2016년 두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2016년 개정내용은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반영되며, 환산 배수를 5배수에서 12배수로 상향한 것은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며 개정한 내용이다.

현재는 갑자기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2016년 개정 이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액과 개정 이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세를 각각 계산한 후 연도별로 가중평균하는 과도기적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19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 방식에 따른 산출세액을 20%로 적용하고, 개정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80%를 적용하며, 2020년 이후부터는 퇴직금 전액을 개정 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¹⁰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5항

나. 퇴직(은퇴)이후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교회가 은퇴(퇴직)한 원로 목회자의 종교활동과 관련한 생활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종교인소득 과세구조에 따라 교회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목회자 개인이 수령한 다음해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6. 논의중인 소득세법개정안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관련하여 2001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2002년부터 발생하는 퇴직금(연금)만 퇴직소득으로 포함하여 과세한다는 사례¹¹를 2018년 이후 발생분만 퇴직소득으로 보겠다는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가. 공적연금관련 개정사항 입법취지

200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의 종류로 신설하였다¹².

이는 소득세 계산시 소득(비용)공제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금의 기여금 불입액전액을 소득공제함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비과세하고 있는 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로 전환하여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을 실제 지급 받을 때 과세하여 소득발생시를 과세시기로 일치시키자는 취지로 개정된 내용이다.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본인 부담분에 대해 불입비용으로 공제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수령하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용자부담분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하자는 취지로 연금제도 개편에 따른 세법규정 보완 절차에 따른 개정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교인퇴직소득세와는 출발선이 다른 사항이다.

¹¹ (공무원 연금 등과 같은)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였거나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받는 일시금만 퇴직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제 2항)

¹² 2000년 12월 29일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마목

나. 2017년 이전에도 종교인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신설해서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2018년 시행 개정세법은 기존에 과세하지 않던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설한 규정이 아니라, 그 동안 근로소득에 해당한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인들의 신념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개정세법의 입법취지다. 이는 소득세법상 수령하는 소득의 성질에 따라 소득을 분류하는 과세소득 분류체계에 대한 예외적 입법이었다.

그동안 종교인 소득 과세여부에 대한 개별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원과 세무당국이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과세대상 소득인 것으로 판단한 점은 종교인이 수령하는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 아니었음을 판례와 유권해석으로 천명해 온 것이다.

<p>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국민개세주의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2조에서는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국법인 등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부과하고 있다.</p> <p>이때 납세의무자의 직업이 종교인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달리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성직자이거나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p> <p>(2011구합36838, 2012년 8월 16일)</p> <p>교단헌법시행세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등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p> <p>(조심2014중0993, 2014년 5월 9일)</p>
--

‘국심2003중2325’(2003.12.1.), ‘소득46011-10122’(2001.2.14.), ‘소득세과-2323’(2008.7.11.) 또한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이였다.

따라서 2017년까지 종교인이 수령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었음을 전제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입법 의의가 없다고 하겠다.

7. 나가는 글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안심사2소위에서 통과된 날 SNS에 올린 내용을 나가는 글로 대신한다.

우리 법이 제정된 날인 제헌절에 법안심사2소위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는 소식을 들으니 2천년 전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챙기지만 정작 더 중요한 정신인 의(justice)와 인(mercy)과 신을 버렸다고 질책한 메세지가 지속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교차된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을 모으려는 노력이 담긴 정관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생각을 고수하고 방어하려는 정관을 만들어 보급하려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느낌이 든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규정으로 합리화 시키는 작금의 현상이 구약의 율법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고르반이란 단어마저 생각나는 이 시점이 암울하다.

얼마나 더 사회에 빛지고, 얼마나 더 사회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야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방으로부터 두드려 맞고서야 잠시 정신을 차렸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 교회에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이 모아진다.

목회자 퇴직금의 실제적 사례와 제안

정준경 목사(생동교회)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가 침체되면서 은퇴하는 목회자들의 생활도 막막해졌고, 교회들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갈등을 겪는 교회가 많이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은퇴하는 목회자의 예우에 대한 표준 규칙이 없고, 개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정한 은퇴 목회자의 예우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 개신교 차원이 안 된다면, 교단 차원에서라도 은퇴 목회자 예우에 대한 표준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1. 생동교회의 예

생동교회는 1980년에 설립된 생동교회와 1999년에 설립된 뜨인돌 교회가 2018년 4월 통합한 교회다.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현재 생동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통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당시 생동교회를 개척한 담임목사(현 원로목사님)는 은퇴하실 나이가 되셔서 뜨인돌 교회를 담임하는 정준경 목사가 담임목사가 되었다.

생동교회가 속한 노회(예장 합동측 남서울 노회)의 규정은 아래와 같았다.

1. 은퇴목사에 관한 (은퇴금 및 기타)에 관한 기준
1) 10년 미만 퇴직금 : 최종연봉 ÷ 12 × 시무연수 위로금 : 퇴직금의 20%
2) 10년 이상 20년 미만 퇴직금 : 최종연봉 ÷ 12 × 시무연수 × 1.5 위로금 : 퇴직금의 20%
3) 20년 이상 30년 미만 퇴직금 : 최종연봉 ÷ 12 × 시무연수 × 2 위로금 : 퇴직금의 30%
4) 30년 이상 퇴직금 : 최종연봉 ÷ 12 × 시무연수 × 2 위로금 : 퇴직금의 40%
5) 연봉이란 사택관리비, 자녀교육비,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예산서에 명시한 사례비(배봉포함) 목회활동비, 도서비 등이다.

2.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

- 1) 은퇴금 외에 매월 생활비를 후임자 급여의 50%~70%를 생존시까지 지급하고, 원로목사 사망시에는 사모님에게 50%를 생존시까지 지급한다.
- 2) 생활비를 일시불로 지급할 경우, 원로목사 최종연봉의 5년치를 지불하며, 원로목사에 관한 교회의 모든 의무를 종결한다.
- 3) 원로목사에게 작성한 규모의 사택을 제공한다.
- 4) 원로목사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한다.

3. 은퇴, 원로목사 예우 위원회 상설기구

조정위원은 목사 3인과 장로 2인을 임원회에서 선정하여 노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서기, 회계를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중 결원시 노회장이 추천한다.

4. 은퇴 예우위원회 임무와 조정

- 1) 해당교회와 은퇴목사간 의견과 실사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개 교회가 목사 은퇴자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지도한다. (각 지교회는 본 안을 당회록에 기록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 2) 개 교회가 은퇴목사 예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교회나 은퇴목사가 조정을 요청할 경우나 노회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위원회가 관여하여 원만하게 조정한다.

5. 은퇴 예우위원회 활동은 노회가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생동교회는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원로목사님이 사택을 매각하여 건축헌금을 하시고, 예배당 안에 사택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하고 계셨다. 통합하면서 원로목사님 사택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택을 준비해드렸다.

퇴직금과 위로금은 없었고, 생활비를 2-2의 규정에 따라 최종 연봉의 5년치를 드려서 지금은 원로목사님에 대한 모든 의무가 종결되었다.

2. 느낀 점

은퇴목사님의 예우에 관한 문제는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의 갈등의 요소가 되기 쉽다는 생각을 했다. 은퇴목사님을 홀대한다고 느끼는 성도들도, 은퇴목사님이 과하다고 느끼는 성도들도 상처를 받았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목회자 본인도 상처받는 말들이 많았다. 그래서 교우들이 이 문제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노회의 규정대로 진행된다면 대다수 교인들이 과하다고 반발할 것 같다. 교단마다 총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표준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3. 제안

현재 한국교회는 은퇴하시는 목회자들에 대한 예우 때문에 미래가 막혀있는 것 같다.

교회가 사역을 하려면 교육, 선교, 구제 등 모든 사역에 재정이 필요한데, 은퇴 목회자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사역을 하기 힘든 것이다.

교회가 어려우면 은퇴하는 목회자가 후임으로 오는 목회자에게 돈을 받아서 나가기도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택과 생활비 두 가지이다.

사택은 교회의 명의로 전세 혹은 구입을 해드려서 두 분이 마지막까지 편하게 생활하게 하고, 두 분 모두 소천하시면 교회의 재산으로 가져오면 좋겠다. 한 번만 준비하면 다음 목회자가 은퇴할 때부터는 크게 부담 없이 사택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생활비는 평소에 매월 연금을 들어서 목회자가 은퇴할 때 교회가 부담을 줄여야만 목회자가 떠난 이후에도 교회가 어려움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다.

나오는 말

리더가 바뀔 때 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를 겪기도 쉽다. 은퇴 목회자 예우 문제까지 갈등을 빚게 된다면 교회는 분열되고, 오랫동안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은퇴하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소박하게 받아서 나가시려고 하고,

교회는 수고하신 목회자에게 정성껏 예우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 일단 노회의 규정을 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규정을 세상이 보면 뭐라고 할 것인가?